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2. 16.
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. 3. 1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3. 3. 22.

다. 상정일자: 제261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(2023. 4. 3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행정지원과장 박상수】

가. 제안이유

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행정지원국장 분장 사무(제4조) 중 '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 건축물 철거' 조항을 도시환경국장 분장 사무(제8조)로 이관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.

가. 주요내용

행정지원국장 분장 사무(제4조) 중 ‘무허가 건물 관리 및 위험 건축물 철거’ 조항을 도시환경국장 분장 사무(제8조)로 이관하는 내용임.

나. 검토의견

- 2022년 10월 29일 ‘이태원 사고’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사고가 일어난 골목에 세워진 가벽과 인근 골목길 불법 증축물이 통행로를 좁히며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으로 판단되어 이에 정부에서는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「건축법」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,
- 이에 따라 해당업무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술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환경국에서 업무를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구민안전과 건축물정비팀을 건축지원과로 팀 이관함에 따라 조례상 분장 사무를 재정비하려는 것으로,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마포구 조직개편한지 얼마 되지 않아 팀을 개편하는 것은 행정사무가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지만 예측가능한 행정으로 조직 진단을 효율적으로 하여 행정적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